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0. 6 선고 2022가합316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승

담당변호사 김남석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

담당변호사 손환필

변 론 종 결 2022. 8. 18.

판 결 선 고 2022. 10. 6.

주 문

1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2019. 12. 14.경 체결된 7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20. 2. 14.경 체결된 25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20. 3. 6.경 체결된 102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203,619,38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3,619,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(D생)는 2001. 8. 1. 인천 중구 E 전 1,323㎡(2020. 7. 2. 분할로 전 48㎡가 F 토지로 분할되었다.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01. 4. 8.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에 관하여 2014. 7.경 C와 소외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각서가 작성되었고, 뒤이어 2014. 7. 31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, 채무자 C,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

협의각서

1. G(이하 이 각서 내에서 ‘갑’이라 한다)와 C(이하 이 각서 내에서 ‘을’이라 한다)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을이 2001년 4월 8일 매매계약을 할 당시 매매대금 중 1/3을 갑이 지급하였으나, 편의상 그 등기명의를 을 명의로 하였음을 확인한다.
 2. 을은 본 각서 작성일 현재 위 토지에 대하여 갑이 1/3만큼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 3. 을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,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고, 을이 매매대금을 제3자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의 1/3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4. 위 제3항과 같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할 수 없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서 위 토지의 시가의 1/3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, 이에 을은 그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날 기준으로 토지의 시가의 1/3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5. 위 사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명의로 위 토지상에 을을 근저당권설정자, 갑을 근저당권자, 채권최고액을 __원(공란으로 남아 있다)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.
- 나. G는 2016. 9.경 C에게 ‘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년 7월경 협의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,

현재까지 위 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그 협의각서상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, 귀하는 그 협의각서상의 대금을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’라는 내용의 지급요청서를 보냈으나, C로부터 별다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.

다. G는 2016. 9. 26. 원고에게 위 가.항 기재와 같은 G 명의의 근저당권 및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,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2021. 1. 27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(인천지방법원 H),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21. 12. 20. 위 강제경매로 매각된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4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 중 96,380,612원만을 배당받았다.

마. 한편, C는 2019. 12. 11.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를 매도한 후,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9. 12. 14.경 70,000,000원을, 2020. 2. 14.경 250,000,000원을, 2020. 3. 6.경 102,000,000원을 각각 증여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각 증여’라고 한다)하였고, 피고는 2019. 12. 14.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L호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이 C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0. 3. 6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이 사건 각 증여 이후 C의 적극재산은 합계 1,493,388,000원 상당으로,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, C의 소극재산은 합계 6,038,310,341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, C는 이 사건 각 증여 무렵에도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순번	부 동 산	감정가액(원)
1	경기 김포시 M 공장용지 1932㎡ 중 1/2지분	653,571,000
2	경기 김포시 M 지상 창고 중 1/2지분	
3	충남 아산시 N콘도 O호	2,600,000
4	인천 중구 E 전 1275㎡	661,725,000
5	인천 중구 F 전 48㎡	11,952,000
6	경기 안양시 동안구 P 임야 26479㎡ 중 4413.5/26479지분	100,000,000
7	강원 강릉시 Q 임야 31770㎡	63,540,000
합계		1,493,388,000

[계속]

순번	채 권 자	채무액(원)
1	중소기업은행	2,207,750,000
2	R(주)	2,362,560,341
3	S	250,000,000
4	원고	300,000,000
5	신용보증기금	663,000,000
6	기술보증기금	255,000,000
합계		6,038,310,341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는 G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300,000,000원을 양수받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이 사건 각 증여 무렵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 사건 각 증여는 C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가 다른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행위로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다.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

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96,380,612원을 배당받았으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3,619,388원(= 300,000,000원 - 96,380,612원)이 남아 있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위 203,619,3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3,619,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으로 422,000,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판결(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1040호,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442호)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

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58 판결,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), 따라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,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,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,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이 그에 기하여 일부라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증여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잔존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태일, 판사 조수진, 판사 오민관